

제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조 고객에 대한 존중

- (1) 모든 고객의 의견과 요구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항상 귀를 기울인다.
- (2)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진실된 정보만을 전한다.

제2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및 제공

- (1) 고객만족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2)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한발 앞서 생각한다.
- (3)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3조 고객의 이익 보호

- (1)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 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제4조 자유 경쟁의 추구

- (1)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
- (2) 경쟁사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실력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5조 법규의 준수

- (1)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해외주재, 해외출장 직원은 해당국가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6조 협력업체와 공존공영

- (1)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 (2)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사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3) 공정한 거래
 - ① 모든 거래는 회사의 이익 외에 어떠한 사항도 고려해선 안된다.
 - ②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
- (4) 상호발전의 추구
 - ① 기술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② 업무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3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7조 임직원 존중

-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대한다.
-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3)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4) 업무시간 이외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8조 공정한 대우

- (1) 성별, 학력,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2) 명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 이동, 진급 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제9조 창의성 촉진

-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2) 임직원들이 의견 제언 및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인재의 육성

임직원의 자질 및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제4 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제11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

- (1) 삼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제반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②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 한다.

제12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삼일인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4)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 (5) 수행업무가 제반 법률, 회사의 규정 또는 공익에 반하게 될 경우 즉시 윤리규정 실무 운영 부서에 신고한다.

(6) 관련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인다.

(7) 직무수행도중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제13조 자기계발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정세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계발에 성실히 노력한다.

제14조 이익의 상충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한다.

(2) 불가피하게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의 이익 상충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15조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1) 기본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특별대우를 금한다.

(3)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감독하며 도울 책임이 있다.

(4)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 행위와 개인적인 금품수수행위를 금한다. 단, 임직원들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생일, 전배, 경조사 등)내에서 가벼운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5)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지시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실무 운영부서에 보고한다.

제16조 회사 재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회사 재산의 개인적 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재산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비공개정보의 이용

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재무/인사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계획자료 등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인하여 타 회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은 비밀로 유지, 관리한다.

② 회사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회사의 명문화된 방침과 절차에 의한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③ 퇴사할 때도 상기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유지한다.

제17조 안전 및 위험 예방

(1)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3)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18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1)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 언어 표현 과 비언어적 표현 모두 하지 않아야 한다.

(2) 동료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3)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임직원은 즉각 윤리규정 실무 운영부서에 보고 한다.

제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9조 국가에 대한 책임

건설기초소재산업 주역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고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20조 사회 발전에 기여

(1) 고용 창출과 성실한 조세 신고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2) 교육, 문화 및 사회사업을 통해 건실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21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2조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기업의 주인이자 최대후원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2)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3) 주주와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

(4) 소유한 주식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주주로서 평등하게 존중한다.

제23조 환경보호

(1) 자연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소모적 낭비 없이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 장 윤리강령의 준수

제24조 윤리강령의 준수

- (1)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윤리강령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은 회사 규정에 의해 포상하며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규정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한다.
- (3) 임직원은 「삼일 윤리강령」 내용을 숙지 후 매년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신입사원 채용, 채용계약 체결 시 윤리강령 실천 서약서를 징구 받아야 하며, 신입사원은 반드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하거나 강요받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 윤리경영 실무 운영 부서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협의 후 조치한다.
- (5)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 윤리경영 실무 운영부서는 윤리강령과 관련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당사자가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보호해야 한다.

제7 장 기타

제25조 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를 감급 이상으로 적용하여 징계한다.

제26조 자문과 해석

당사의 윤리경영과 관련, 윤리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의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